

민방위 업무 안내

① 상담 및 문의

미래관 103호 ☎ 820-0178, 홈페이지 → 대학안내 → 기구안내 → 총무·인사팀 → Q&A

① 직장민방위대 편성

■ 대상 : 민방위대원 중 본교에 재직중인 만 40세 이하의 교직원(계약직 포함)

▶ 만 41세 이상인 경우 의무해제자로 편성에서 제외됨.

예) 2013년도 : 1973~1993년생 까지 민방위대 편성(예비군 8년차 종료 후 만40세까지)

▶ 대학 및 주간예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(석사과정에 한함) 재학생은 법정(당연)제외자로 편성에서 제외됨. →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되었거나 교육훈련이 부과된 경우 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편성에서 제외됨.

① 전입 및 전출 신고

전입 및 전출 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계에 신고

■ 전입신고

민방위대 편입신고서(총무과 자료실),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이 기재된 것) 제출

→ 민방위 교육년차 및 교육훈련 이수사항 확인 → 직장민방위대 편성 →

서울시스템(<http://dongjak.eminwon.seoul.kr>)입력

■ 전출신고 : 퇴직 또는 전직시 직장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스템 입력

① 교육훈련

■ 교육훈련시간

구분	대상	시간	장소	비고
기본교육	1~4년차	4시간	동작구민회관	-
비상소집훈련	5년차 이상 - 만40세	1시간	교내	-

*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시 보충교육 실시, 보충교육 불참시 벌금 10만원 부과

■ 교육훈련 통지

▶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

■ 3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동안에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면제처리가 되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.